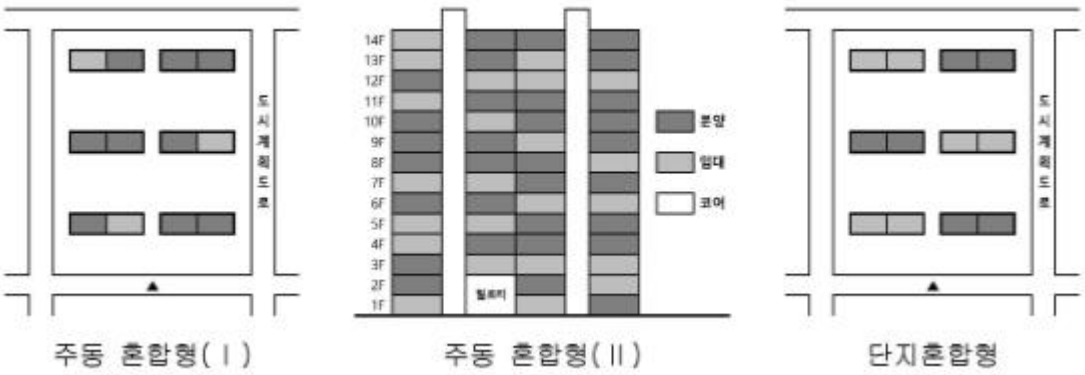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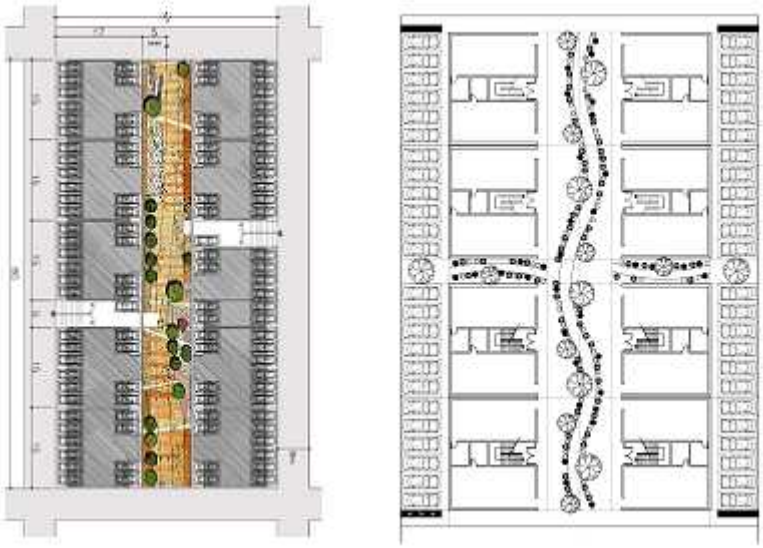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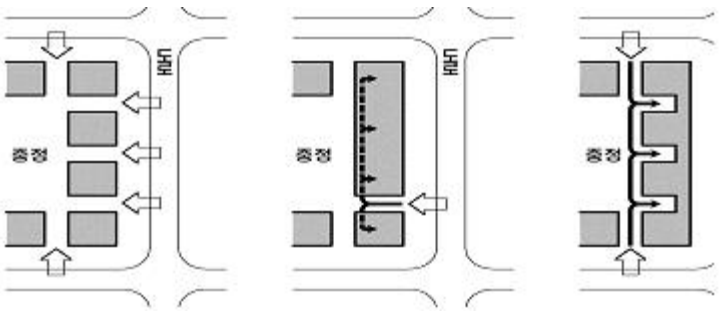
[별표 1의2] 주택건설용지 계획기준 <개정 2021. 5. 17.>

주택 유형별 혼합	1. 사회적 혼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규모,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블록내에 주택 유형별로 가급적 혼합하여 계획 * 혼합유형 : 지구여건,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  2. 블록내 혼합하는 경우에는 블록내에서 유형·규모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외형적으로 구별되지 않도록 설계 3.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주민간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하고 배치
주거 및 시설수요 반영	(1) 1. 사전예약에 따라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 특성을 분석하여 시설의 규모・종류・위치 등을 결정하는 맞춤형 부대복리시설을 공급 (2) (3) 2. 장기공공임대주택 용지에는 고령자 등 입주민의 유형이 집단화되는 경우 맞춤형 주거동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고려한 주거모델 권장 (4) (5) 3.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1, 2인가구의 급증에 따른 주택수요 반영한 주택유형 및 규모 검토・반영 유도

수요자맞춤형 주거모델(예시)	공급 전략
노인케어형	・노인주거에 최적화된 주거모델 ・노인케어센터(주동일체형 또는 독립형)를 중심으로 건강관리, 클리닉 등 맞춤지원 서비스
육아지원형	・맞벌이 핵가족에 최적화된 주거모델 ・공동식당, 공동육아, 방과 후 교실, 야간보육 연계 등 육아지원 서비스제공 및 관련시설 설치 강화
경제생활형	・1- 2인 가구, 신혼부부 등 경제적 자립에 최적화된 주거모델(타 단지대비 20~30%의 주거비 절감) ・주거비 절감을 위한 超저렴주택, 최소공간 계획, 유지관리비 저감설비 공동시설 도입

단독주택용지의 계획적 관리	1. 필지형 단독주택은 주로 다가구·다세대로 활용됨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주차공간 등) 용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공공공간과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주도의 관리방안(협정, 규약 등) 마련 유도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5의 기준을 준용하되, 특히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도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것이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확보, 커뮤니티 형성 및 프라이버시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블록형태로 조성되도록 유도 * 블록형태(10unit) 개발 예시 (다가구/다세대형) (점포겸용형)  * 블록형태 차량 진출입유형  3. 차량 유출입 개소 최대한 억제하고 추가 녹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유형별(전용주거, 다가구 허용 등) 입지 구분을 권장